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# 금감원 교통사고 위장환자에 대한 점검 실시

□ 국토해양부와 금감원은 위장환자\*에 대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2010년 10월부터 민·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.

- 정부는 위장환자의 높은 비율 등에 기인하여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, 2007년 11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(이하 자배법)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·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음.
- 이를 점검하기 위해 손보험회는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나 진료기록의 열람권한만 있고 검사 및 사후조치에 대한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며 위장환자 근절에 한계가 있음.
- 따라서 위장환자 근절을 위해서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점검 및 행정제재 업무를 통합하여 민·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체계를 운영하기로 함.

\* 위장환자(속칭 나이롱환자)란 경미한 자동차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를 말함.

□ 교통사고 입원환자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손보험회 주관의 점검방식을 지자체 주관의 민·관 합동 방식으로 변경하고 위반사항 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.

- 손보험회 주관의 의료기관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방식을 지자체 주관으로 국토부, 금감원, 손보험회가 참여하는 민·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함.
- 또한, 민·관 합동 점검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.

□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근절에 있어 점검과 행정제재를 통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교통사고 부재환자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- 향후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의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자배법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, 2010년 10월부터 지자체 주관으로 「민·관 합동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」를 불시에 점검할 계획임.

(교통사고 부재환자 근절을 위한 민·관 합동 점검 실시, 금감원 등, 9/27)